

● 예산성과금운영세칙(040202)

제정 2001. 4. 16. 시행세칙 제 64호
 개정 2005. 5. 19. 시행세칙 제142호
 개정 2005. 5. 19. 시행세칙 제142호
 개정 2007. 1. 29. 시행세칙 제190호
 개정 2007. 3. 28. 시행세칙 제210호
 개정 2008. 1. 16. 시행세칙 제238호
 개정 2009. 2. 23. 시행세칙 제267호
 개정 2017. 8. 14. 시행세칙 제46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심사·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3.28, 11.12.30>

제2조(적용범위) ①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07.3.28, 11.12.30>

② 제안규정 및 타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세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07.3.28, 11.12.30>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예산성과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하 “예산편성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17.8.14>

1. <삭제 17.8.14>
2. <삭제 17.8.14>
3. <삭제 17.8.14>
4. <삭제 17.8.14>

제4조(지급금액) <삭제 17.8.14>

제5조(지급절차) ① 제3조에서 정한 예산성과금 지급종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사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며, 사장은 제2장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한다. <개정 11.12.30>

② 사장은 제1항의 지급내역을 이사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 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구성

제6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설치) ① 제3조에서 규정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5.5.19>

1. 경영기획본부장(위원장)
 <개정 05.5.19, 07.1.29, 07.3.28, 08.1.16, 09.2.23>
2. 공사 예산, 회계, 기술담당 부서장 1인
3. 도 예산담당부서 담당공무원(담당 또는 과장) 1인
4. 도 감독부서 담당공무원(담당 또는 과장) 1인
5. 사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

③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외부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사업과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인사로 하고, 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여부에 관한 사항
3. 예산절약액, 순이익금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산정
5.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사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신설 17.8.14>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담당부서의 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11.12.30>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예산성과금심사 신청

제12조(심사의 신청) ① 제3조에서 정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해당되어 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장이 예산절감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예산절감액을 산정하여 공사 사장에게 그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장은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심의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로 인한 성과금은 경기도지사의 회계결산 승인 익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7.8.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예산절감액 및 성과금요구액, 성과금 지급계획, 성과금 지급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중 사장에게 예산성과금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1.12.30>

제13조(지급대상자) ①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7.8.14>

- ① <삭제 17.8.14>
- 1. 개인적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 한때에는 “당해 직원” <개정 17.8.14>
- 2. 다수 직원의 노력으로 예산절감 한때에는 직접 기여한 직원으로 하며 개인별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17.8.14>
- 3.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대상은 “직제규정 제5조 임원(비상임이사 제외)과 직제규정 제11조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에서 정의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하며 기여한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17.8.14>

② 공사 소속직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동의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장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제14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위원회는 사장이 부의한 예산성과금의 심의요청에 대하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하여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1.12.30>

제15조(심사시 유의할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산성과금 “지급”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이미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기술공법의 적용여부와 다른 공사등의 성과금 지급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등
- 2. 제도개선 지적사항,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 개선내용이 자발적 노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 3. 제안제도의 채택, 다른 법령에 의해 상여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 4. 지출절약 또는 수입(이익)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를 상급자까지 포함시켜 과다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는지 여부
- 5. 성과금의 가산지급요건과 기여정도에 따른 차등 지급의 타당성등

제16조(예산성과금 지급불가)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불가” 결정을 하여야 한다.

- 1. 예산성과금 지급신청내용이 자발적 노력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 새로운 제도개선이나 신공법 적용등 창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2. 절감액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예산절감실적이 없는 경우

3. <삭제 17.8.14>

4. 기타 일상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예산절약 등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부 칙<17. 8. 14>

이 세칙은 2017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 <삭제 17.8.14>

제18조(지급시기) ① 제15조에 의하여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지급시기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른다. <개정 17.8.14>

1. <삭제 17.8.14>

2. <삭제 17.8.14>

제19조(예산상 조치)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포상금”으로 하며,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한 예산성과금은 해당과목에서 절약된 금액을 당해 연도 중 포상금으로 전용 후 지급하거나, 절약된 금액에 상당한 금액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7.8.14>

1. <삭제 17.8.14>

2. <삭제 17.8.14>

② 예산절감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17.8.14>

부 칙<01. 4. 16>

이 시행세칙은 2001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05. 5. 1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1. 29>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7. 3. 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8. 1. 1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9. 2. 2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